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88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5.
3. 회부연월일 : 2025.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종료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재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의3. (생략) <u><신설></u> 6.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45조의21(사업) ① ----- ----- -----. 1. ~ 5의3. (현행과 같음) <u>5의4.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에 대한 매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사업</u>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청년교통비 지원사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8~2022년 동안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동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반영된 이후 2022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월평균 약 15만 4천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는데,

당초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에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분담비율을 변경한 후 한시적으로 1년 연장·종료된 바 있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만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금액	46,200	92,400	92,400	92,400	92,271
- 국비(직접비)*	46,200	92,400	92,400	92,400	73,823
- 지방비	-	-	-	-	18,448
지원대상자(월평균)	10.9	15.0	15.9	15.5	15.7

주: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시스템 운영비 등) 제외한 순수 지원 국비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개정안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공단의 사업으로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종료 사업을 재개하여 산업단지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당초부터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지원하여 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만 지원하도록 계획되었고, 이에 따라 종료된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어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안, 제2203620호)」과 달리 개정안은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를 5만원 상당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¹⁾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이학영 의원안
제45조의21(사업) ① ----- ----- -----.	제45조의21(사업) ① ----- ----- -----.
1. ~ 5의3. (현행과 같음)	1. ~ 5의3. (현행과 같음)
<u>5의4.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u> <u>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u> <u>(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에 대한 매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사업</u>	<u>5의4.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u> <u>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u> <u>대한 교통비 지원</u>
6. ~ 12. (현행과 같음)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1)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2020~2022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평균 사업비 (국비+지방비)의 실적치인 923억 5,700만원이 연평균 재정소요로 추계된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존 종료 사업을 재개하는 대신 더 넓은 수혜대상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²⁾이 시행 중이고, 개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사업 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³⁾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2) (K-패스) 만 19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환급비율을 우대(환급비율 :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

3) 타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5.8.27.)	☐ K-패스 사업을 통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교통비 일부 환급 중 - '26년에는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도 도입하여 혜택 강화 예정 * (지하철·버스) 청년 5.5만원, (GTX·광역버스 포함시) 청년 9만원 → 산단 근무 청년 대상 별도 교통비 지원사업 신설 필요성 低 ☐ 예산사업은 정책 수요, 他 지원사업 현황,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 → 개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면 사업 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